

## II.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및 성인지 예산서 지침

- ▶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정책·단위·세부사업)
- ▶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개요
- ▶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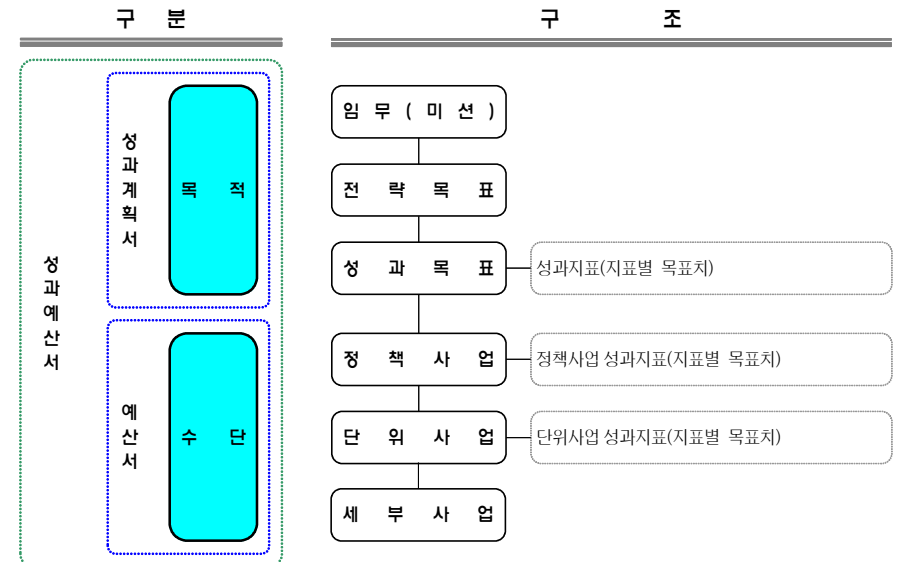
## I 세출예산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

### 1 기본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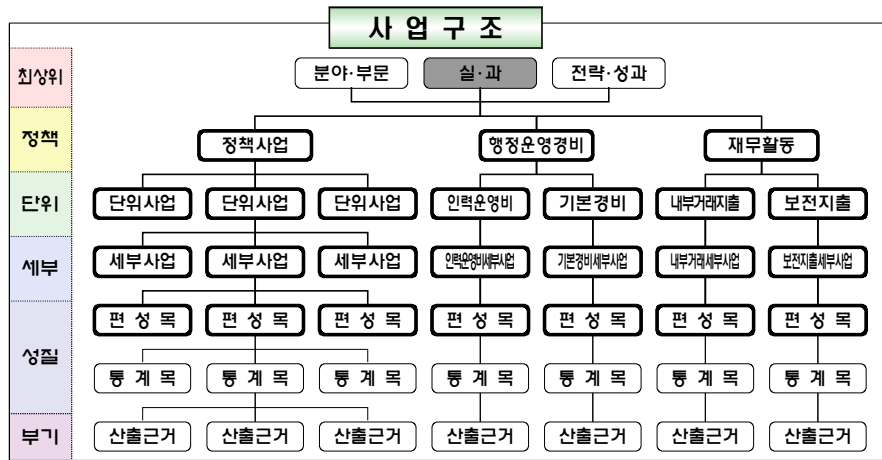
#### □ 조직별 임무, 전략·성과목표를 근거한 사업설정

- 조직별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조직별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목적을 의미하며,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를 형성

-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
-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
- 통계목 하위에 산출근거를 설정
- ※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도 사업구조화에 포함



- ※ 하나의 실과에서 여러개의 정책사업 설정 가능(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 통계목과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 표시되지 않고, 통계관리 등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

□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다음 원칙에 유의하여 설정

구분	주요원칙
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li> <li>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본청과 산하기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사 정책사업을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li> </ul>
단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li> </ul>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하나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가능</li> <li>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함이 원칙이나 혼재 가능</li> <li>특정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 관리</li> </ul>

2 정책사업의 결정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 근거가 됨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단일 정책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들이 각각 기능을 달리할 경우 정책사업을 분리

예시

기초생활보장(081)을 위한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이, 관광(062) 기능으로 분류되어야 할 경우, 등 관광기능의 사업을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

- 정책사업이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될 경우는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

예시

대중교통지원사업(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인 유류비보조사업이 시내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지원(대중교통과), 택시운송조합에 대한 지원(교통정책과) 등 2개 부서에서 지원될 경우, 부서가 상이하므로 각각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

- 단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들이 다수의 실·과와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실·과 조직만 관련되도록 정책사업을 조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조직
해양관광·레저 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	해양개발과
	동해안해수욕장선진화	해양개발과
	아름다운동해안가꾸기	기획총괄과
	낚시전문어선 건조지원	어업지원과
	청소년해양수련원시설확충	해양개발과



정책사업	조직
어업인지원어촌개발	해양개발과
어업활동지원	어업지원과

- 과 단위에서 정책사업화하기 어려운 단위사업은 조직간 업무조정(지자체별 정책판단 사항)을 통해 다른 과의 동일 사업목적 정책사업으로 이관 필요

조 직	단위사업	정책사업	조 직
수산개발과	옥외사육장 증축	내수면어업시험연구및지원	내수면개발시험장
	내수면어업지원		
	내수면개발타당성조사용역		

- 본청과 산하기관에 유사 정책사업이 있는 경우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
- 읍면동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자율 선택하여 정책사업을 설정

**방법 1**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설정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읍	○○읍·면·동 사업경비	○○읍·면·동 진입도로보수
	○○읍·면·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자체적으로 정책사업 설정 시 분야·부문별로 정책사업을 설정하되, 읍면동의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사업 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최소

**방법 2** 읍면동은(인력운영비·기본경비)만 설정하고, 정책사업은 본청에서 설정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통리반장지원경비
○○읍	○○읍·면·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1개의 정책사업은 다수의 회계 및 기금을 포함할 수도 있음

□ 적정 정책사업 수

- 정책사업 유형화(예시)를 참조, 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부문별로 2~8개의 정책사업을 설정[정책사업 유형화(예시)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 자치단체 실·과별로 정책사업을 배분하되, 실·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예를 들어 유형화된 정책사업에 의하면 1개의 정책사업을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3** 단위사업의 결정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 단위사업 내 동일사업에 일반/특별회계가 혼재할 경우 해당 단위사업을 2개로 분리

사회복지과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정책사업	잘 못 된 사 례		잘 된 사 례	
	단 위 사 업	회 계	단 위 사 업	회 계
주민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사업	일반+기타특별	1.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일반
			2.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
			3. 저소득가구자활지원	일반

- 서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구성된 단위사업들을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할 수 있음
  - ※ 주머니(회계)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단위사업들의 정책 목적이 동일하다면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와 부합

**예시**

※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일반회계), 국민주택관리(기타특별회계)라는 2개의 단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라는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으로 운영

□ 적정 단위사업 수

- 통상 1개의 정책사업에 4~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 (World Bank의 권고)
- 1개의 단위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 수를 고려

#### 4 세부사업의 결정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 □ 광역자치단체는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

- 직접사업 :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 지원사업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보조하여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

※ 동일 세부사업 내에 직접 및 지원 사업이 혼재되어서는 안 되나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설정 가능

##### 예시

○○광역시의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이라는 단위사업이라 '노인종합복지회관건축'사업은 ○○광역시가 직접 수행하고, '경로당시설기능보강'이라는 사업은 자치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경우, 이를 구분하여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

##### □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사업을 구분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국비보조사업(국고보조, 지특보조, 중앙기금보조) 및 시·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세부사업을 말함

- 자체재원사업은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고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
  - 중앙부처에서 지역민간단체 등으로 국비를 직접지원하고, 자치단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자체재원사업으로 설정하고,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표시하여 관리

※ 예) 산업자원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지역전략산업(국가직접지원)”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1:1 설정)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함이 바람직

- 다만,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내에 여러 개의 세부사업이 있거나 하나의 보조사업을 여러 개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보조사업에 대해 여러 개의 세부사업 설정이 가능(1:N)

- 보조재원 포함사업에 정률 또는 정액의 지방비 의무 부담분의 추가로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보조재원 포함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조재원 포함 세부사업 하나로 설정 가능

- 특히, 추가 지방비 부담분을 동일 편성목에 편성한 후 지출원인행위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 예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구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	1,000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국비	500백만원 ( 5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시도비	300백만원 ( 3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0백만원 (추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기초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	1,700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 시군비 추가분은 부지매입비 및 추가 시설비 등 소요액
		국비	500백만원 ( 50%)	시설비및부대비	
		시도비	300백만원 ( 30%)	시설비및부대비	
			20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시군비	200백만원 ( 20%)	시설비및부대비	
50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 예시 경로당 건립 사업

구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광역	경로당건립	계	50백만원		기준보조율에 의거 편성하는 지원사업
		시도비	50백만원 ( 5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기초	경로당건립	계	152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시도비	50백만원 ( 50%)	시설비및부대비	
		시군구비	50백만원 ( 50%)	시설비및부대비	
			5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2백만원 (추가)	국내여비			

- 국비 또는 시도비 보조사업에 기준인건비 항목(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편성
  - ※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정책사업에 편성(기준인건비 항목이 아님)
-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사업명을 준용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 다만, 자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자체재원 사업에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보조재원 포함사업으로 설정 가능

**예시**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원 인건비

보조재원 사업명	구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계	150백만원		
	병해충방제사업	100백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병해충방제 예찰원인건비	50백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 -병해충방제예찰원인건비 또는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보조)

-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국비(또는 시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인 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조재원이 포함되나 보조여부는 계획에 해당하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자체재원으로 설정

**세부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사항**

상기 기준에 따라 세부사업을 설정한 후, 특정 세부사업이 다음의 목록화·코드화된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구분 관리

- 정보 제공 목적이며,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율설정 가능

**사업유형 예시**

- ◆ R&D, 제도혁신, 정보화, 미래대비투자, 국가균형발전, 인적자원개발, 성장동력확충, 읍면동 등
- ※ 읍면동은 본청에서 읍면동의 사업을 편성했을 경우

**행사·축제예산은 세부사업 별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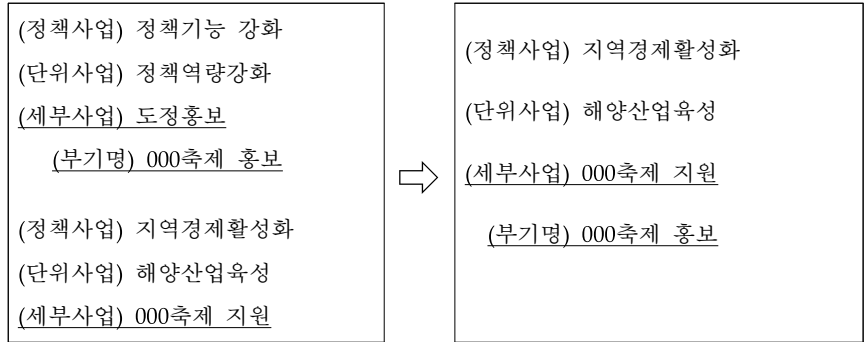
-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원가회계 정보를 관리

**지자체 행사·축제예산 사업구조화 <예시>**

**< 예시 ① > 지자체 행사·축제예산이 여러 세부사업에 편성된 경우**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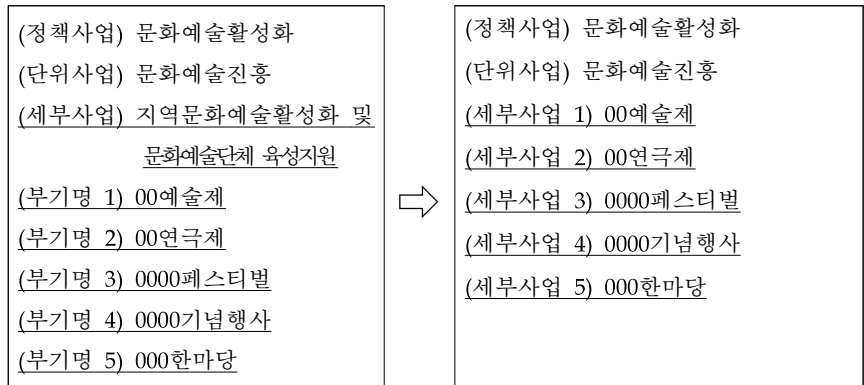
**【개 선】**



**< 예시 ② >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축제 예산이 편성된 경우**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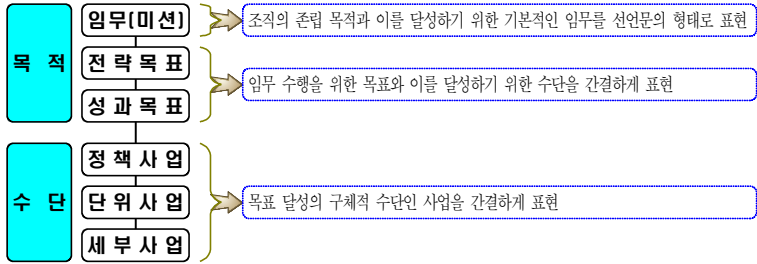
**【개 선】**



## < 사업명칭 부여기준 >

### □ 일반적 기준

- 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한 전략목표·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명칭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



- 전략목표·성과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사업은 수단 부분만을 표시해야 함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 상위 사업은 하위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
- 『△△사업』, 『△△업무』, 『△△실시』, 『△△추진』 등 사업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지양
- 동사형 명사로 종결되도록 표현 (예: ~관리, ~건설, ~구축, ~운영, ~정비, ~조성, ~상환, ~지원)

### □ 사업명칭 부여 사례

- 사업명칭 부여 시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목적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잘못된 사례 (목적+수단)	잘된 사례 (수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하수시설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하수시설 정비

## 참고 | 중앙에서 확정내시된 사업이 자치단체 세부사업에 없는 경우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사업구조화

- 확정내시된 사업이 자치단체에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사업구조화(세부사업 설정)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사업과 1:1 대응이 되도록 함

※ 해당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없는 경우 : 해당사업 신설

-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대 자치단체 세부사업을 1:1(기존의 사업과 신설된 사업 모두를 각각 매칭)로 매핑하거나 1:N(여러 세부사업을 한 개의 국고보조금과 매칭)으로 매핑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실시
-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공문을 통보해와 자치단체에서도 공문으로 교부신청 작업 등을 수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시스템상으로 교부신청 등 작업을 수행해야 함

### □ 국고보조금 집행

-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구조화된 사업이 없어 새로 사업을 만들고, 동 사업을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간주\* 또는 성립전 사용\*\*이 불가피

\*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시스템으로 간주예산 편성 후 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집행 가능

## 5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

### □ 인력운영비

-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

#### 〈 인력운영비의 범위 〉

목 그룹	편성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일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총무과·인사과 등 총액인건비 총괄부서에서 사업구조화 실시
  - 해당부서의 행정운영경비내 단위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임 [예:인력운영비(총괄)]
-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을 설정

※ 보조금이 포함된 인력운영비의 사업구조화는 “4.세부사업의 설정” 참고

- ❖ 통상 특정부서가 일괄하여 예산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의 예
  - 개인에게 직접 수혜되는 인력운영비 <인건비(101), 직무수행경비(204), 성과상여금 등>
  - 개인에게 간접 수혜되는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등(304) 등>
- ❖ 통상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의 예
  - 수당(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 ※ 상기 내용은 인력운영비 편성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항이며, 자치단체별로 인력운영비 운영 상황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 기본경비

-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
-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편성목	통 계 목	기 본 경 비 의 내 용
201 일반운영비	사 무 관 리 비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일·숙직수당(사업소, 읍·면·동)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범용S/W구입비
	공 공 운 영 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2 여비	국 내 여 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월 액 여 비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 관 운 영 업 무 추 진 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 원 가 산 업 무 추 진 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 서 운 영 업 무 추 진 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 책 급 업 무 수 행 경 비

- ※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되는 것임
- ※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로 상호 구분될 수 있도록 [행정운영경비(00과)]로 부기하고, 기타(900)으로 관리 (분야·부문을 가질 수 없음)



## 6 재무활동의 설정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영역은 총계관리 및 사업 관리 방식의 차별화를 위해 재무활동(비사업)으로 설정

### □ 재무활동의 범위

-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통계목 전체
- 내부거래지출
  - 기관 내의 회계 간 전출·입금
  -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구분	편성목	내용(통계목)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701)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기금전출금(702)	기금전출금
	예탁금(704)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705)	예수금 원금상환, 예수금 이자상환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 보전지출

- 차입금 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구분	편성목	내용(통계목)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31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지방채 증권이자상환, 기타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6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지방채 증권원금상환,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차관상환, 기타해외채무상환
	예치금(602)	예치금
	반환금기타(802)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 등

### □ 재무활동의 설정

- 각 부서의 분야·부문에 정책사업 수준으로 설정하되, 복수의 분야·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의 대표적인 분야·부문에만 설정
- 상호 구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명칭을 부기 [예: '재무활동(○○과)']



## < 혼동하기 쉬운 사업구조화 사항 >

### 1. 예비비

- ▶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실 등에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관리  
⇒ '160 예비비' 분야, '161 예비비' 부문에 해당됨
- ▶ 단,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관리  
⇒ 해당 특별회계가 속한 정책사업의 분야/부분에 해당됨
- ▶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업구조화(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기존에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

### 2. 지방보조금 사업구조화

- ▶ 당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구조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
- ▶ 기관 총액(Ceiling)을 일괄 편성하고 추후 사업공모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부서에서 적정한 정책 혹은 단위사업을 구조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

###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4. (총무과의) 교육훈련여비

- ▶ 교육훈련 및 파견자의 인건비는 총무과 등에서 교육훈련정책사업 내지는 단위사업으로 관리
- ▶ 특정사업에 속하지 않는 전 실과의 여비가 총무과(혹은 담당부서)에 편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정책사업 내지 단위사업으로 구조화 하여 관리

### 5. (회계과의) 정수물품 구입 풀 비용

- ▶ 전 실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구입비용이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되고 있다면 (회계과에서 구입하여 전 실과로 배분 시), 당해 회계과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관리

## <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공기업) 사업구조화 절차 >

### □ 기본원칙

-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도 사업구조화  
- 향후 예산개요·재정연감 등의 합산작업을 고려하여 사업구조화는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요구·조정·확정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실시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 사업구조화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예산·회계 운영은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  
- 공기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은 현행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함

### □ 사업구조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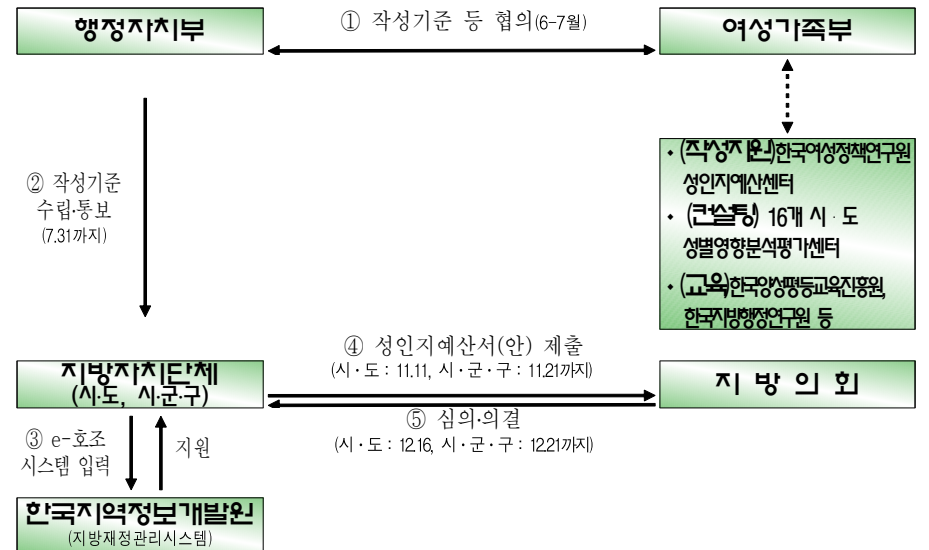
-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구조화  
- 본청의 실과팀에 사업구조화를 하는 경우  
▪ 기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각각 1개의 단위사업 설정 (필요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설정)  
▪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 소속기관(상하수도본부 등)에 사업구조화를 하는 경우  
▪ 소속기관별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각각 1개씩을 설정하고, 1개의 정책사업 아래에 1개의 단위사업 설정  
▪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 기금의 사업구조화  
- 기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각각 1개의 단위사업 설정 (필요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설정)  
-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 II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 1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마련 및 통보 (행정자치부 → 여성가족부 협의, 지방자치단체 통보)</li> <li>- 「'16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배포(『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포함)</li> </ul>
8~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사업 선정 (각 지방자치단체)</li> <li>○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li> <li>- (컨설팅)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li> <li>- (교육)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li> </ul> </li> <li>○ '16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개별 사업부서)</li> </ul>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성인지예산서 제출·취합 (해당 실·국, 여성정책담당부서 → 예산부서)</li> <li>- 성인지대상사업의 선정은 예산부서가 총괄하고, 여성정책담당부서는 <u>사업부서</u> 및 각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예산부서에 제출</li> <li>※ 최종 선정된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하여 해당 실·국에서는 부서별 성인지예산서를 취합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부서에 제출</li> </ul>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 (예산부서)</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예산서 지방의회 제출</li> <li>- '16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 의회 제출</li> </ul>

### 2 추진 체계



#### □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마련·통보(행정자치부)

- 국가정책의 방향,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작성에 관한 기준 마련 후 여성가족부와 협의 및 확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과 함께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통보 (7.31까지)

#### □ 성인지예산서 작성(시·도, 시·군·구)

-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작성기준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평등 목표 수립
    - ※ 성평등 목표는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정책 수요, 자치단체장의 성인지 혹은 성평등 관련 공약사항,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여건에 맞게 1~3개로 수립
    - ※ 성평등 목표의 수립은 예산부서와 여성정책담당부서 등이 주관하고 필요할 경우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활용
    - ※ 성평등 목표 수립시, 지자체의 성평등 지수 등 성평등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수립
  - 수립한 자체 성평등 목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확정 후 성인지예

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과)예산안에 반영

※ 가능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를 예산서의 성과지표와 연계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사업(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를 동시에 심사·확정 후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 제출

### 3 대상사업선정기준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대상사업	비고
여성정책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3~'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li> <li>◇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여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li> <li>※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li> </ul>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3.16.시행)에 따른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2012.3.16. 시행)에 따라 당해연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사업이 재정집행을 수반할 경우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됨.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경우 권장과 필수 구분 없이 필수사업으로 일원화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 6 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회계연도의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 대상사업 선정절차

- 자체 수립한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사업의 선정은 예산부서가 총괄하고, 여성정책담당부서는 사업부서 및 각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예산부서에 제출
-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고, 종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

### 4 작성항목구성

#### 1 작성부서 및 항목

작성 부서	작성항목
자치단체 예산부서	I. 성평등 목표
	II.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III.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실·국	IV.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실·과	V.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소요자원, □ 성별 수혜분석,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2 성인지예산서는 'e-호조시스템'에 입력

- 사업(성과)예산안을 'e-호조시스템'에 입력 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임을 표기 (예산안에 동 내용 표시)
- 사업(성과)예산안과 연계하여 'e-호조시스템'으로 작성 및 출력

### III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 1 자치단체 예산부서

##### I. 성평등 목표

○

-

-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단체장의 공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
  -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1~3개 목표를 정하고 내용을 기술
  - 각 실·과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의 내용을 포괄하도록 작성

##### II.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기술
  - 성평등 목표별로 각각 관련한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주요 사업명을 제시하고 사업수와 예산액을 총계와 일치
  - 주요 사업명은 신규사업, 예산비중 높은 사업, 대표사업 등에 해당.
- 각 실·국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작성사례 참조

##### III.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 e\_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2 실·국

##### IV.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 실·국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 각 실·과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를 참조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개수, 분야,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 주요 사업명은 신규사업, 예산비중 높은 사업, 대표사업 등에 해당
  - 작성사례 참조

##### 총괄표

※ e\_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사업별 총괄표

※ e\_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3 실·과 (1. 사업총괄표)

#### V.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 1. 사업 총괄표

○○ 실·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사업별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의 개수, 분야,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 주요 사업명은 신규사업, 예산비중 높은 사업, 대표사업 등에 해당  
- 작성사례 참조

#####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사업별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4 실·과 (2. 사업별 설명자료)

#### 2.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회계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추진근거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 사업개요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재 가능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본 사업이 해당되는 칸에 “○” 표시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 성별 수혜분석

### ※ 성별 수혜분석 작성시

- 센터, 시설, 기관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이용자 성별분리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화장실, 보도블럭 등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가능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체(계)'를 중심으로 작성
-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사업목적, 예산항목 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  
(예) 노인돌보미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 xx지역 통계연보의 xx구 독거노인 수 일 때,  
사업수혜자 : 돌보미 수(x) →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수(○)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 100% 사업인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의 단위는 여성 명(%)과 전체(계)의 값(명)만 기재. 여성 값(명)과 전체(계)의 값(명)은 동일.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남성의 값(명(%) 미기재
- 2016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등의 자료입력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임을 표 하단에 명시. 단,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처음인 경우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의 '계'만 작성

### ○ 사업대상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예: 통계청 지역통계의 xx구 남녀 인구수)

-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
- 통계청의 국가기초통계,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백서 및 지역 통계연보 등 각종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해당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3년, '14년, '15년 현황 제시
-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되는 대상자를 반드시 명시
- 단위는 '명(%)'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명(%)은 전체의 값(명)과 같아야함. 단,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 ○ 사업수혜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사업수혜자 명시 : (예: xx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집단
- '13년, '14년, '15년 현황을 제시하며, '13년, '14년은 해당 연도의 집행기준, '15년은 '15년 현재까지의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치 기재
- 표 하단의 동 사업의 실제 수혜자가 누구지를 반드시 명시
- 단위는 '명(%)'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명(%)은 전체(계)의 값(명)과 같아야 함. 단,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 ○ 예산구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동 사업의 총 사업비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수혜자의 비율 등으로 예산을 배분
- '13년, '14년, '15년 현황을 제시하며, '13년, '14년은 해당 연도의 집행기준, '15년은 '15년 현재까지의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치 기재
- 단위는 '백만원(%)'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백만원(%)은 전체(계)의 값(백만원(%)과 같아야 함. 단, 전체(계)의 '%'는 100%이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지 않음

## □ 성별격차 원인분석

○

○

※ 사업유형별 작성요령

구분		중점 고려사항	예시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수혜율 100%사업	본 사업과 관련한 현황(실태), 성평등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사회·문화적 여건 및 배경을 기술	사례1 참조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사례2 참조
	인프라성 사업		사례3 참조
	가구(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사례4 참조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낮은 상황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 정책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	사례5 참조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상황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 정책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	사례6 참조
	인프라성 사업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 등과 연계하여 기술	사례7 참조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 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과 연계하여 기술	사례8 참조

□ 성과목표

성과목표	'14년 실적	'15년 추정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 ※ 사업(성과)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설정
- ※ 계속사업의 경우 '14년 실적이 없으면 생략가능  
신규사업의 경우 '15년 추정치, '16년 목표치만 기재
- ※ 성과목표 작성 예시는 **【부록4】** 참조

□ 성평등 기대효과

-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 ※ 사업의 목적,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등을 감안하여 기술